

의안번호	2207850
의 퇴 인	이인선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1.
추 계 번호	25F05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는 2027년 91억 원, 2031년 91억 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55억원(연평균 91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(안 제13조)	-91	-91	-91	-91	-91	-455	-9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 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○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30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3조 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개정안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은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 - 향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(잠정) 64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등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
 - 다음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벤처투자회사 등*이 해당 출자로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
 -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 -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 -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 - 벤처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
 - 벤처투자회사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
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 등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 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※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: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
- 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적용기한: 2025.12.31. → 2030.12.31.

□ (감면실적)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최근 5년 (2020~2024년)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동 제도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는 2020년 202억원에서 2023년 40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4년(잠정) 295억원으로 감소
 -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,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 및 출자 지분 매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하여 비과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2]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추이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	연평균 (‘20~’24년)
비과세	24	41	120	205	64	91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비과세 규모인 91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세수 감소효과	91	91	91	91	91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는 2027년 91억 원, 2031년 91억 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55억원(연평균 91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(안 제13조)	-91	-91	-91	-91	-91	-455	-91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